

의안번호	2216742
의 퇴 인	김준혁의원
회 답 일	2026.8.5.
추계번호	26D0729

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희생자유해발굴 감식단의 설치)	희생자유해의 조사·발굴,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둔(제1항)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(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희생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·유품의 보존 등)	외교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7조(유전자 검사)	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8조(포상금)	외교부장관은 제보·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0조(협의체의 구성·운영)	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·발굴 및 봉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,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1조(외국과의 협력)	국가는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희생자유해의 조사·발굴을 수행할 수 있으며, 희생자유해의 조사·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사·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희생자유해발굴 감식단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희생자유해의 신 원확인 및 유해·유품의 보 존 등)	
3	안 제7조(유전자 검사)	
4	안 제8조(포상금)	
5	안 제10조(협의체의 구 성·운영)	
6	안 제11조(외국과의 협력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 유해를 조사·발굴하여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고,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,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제정안에 따른 희생자유해발굴단 설치와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, ① 희생자유해발굴단 소속 인력 규모 및 구성 ② 유해발굴에 소요되는 단가 및 건수 ③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단가 및 건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제정안은 희생자유해발굴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유전자검사의 경우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26년 대일항쟁기강제

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사업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사업 예산: 2026년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내역			
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(2432-300)	일반수용비 (210-01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6,000
			기타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3,000
			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해 유전자검사	2,000
	공공요금및제세 (210-02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2,000
			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해 유전자검사	2,000
	임차료 (210-07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9,000
	시설장비유지비 (210-09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해 유전자검사	45,000
	재료비 (210-11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해 유전자검사	194,000
	일반용역비 (210-14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135,000
			기타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39,000
	국내여비 (220-01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16,000
			기타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2,000
	국외업무여비 (220-02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38,000
			기타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156,000
			강제동원 희생자 유족·유해 유전자검사	6,000
	사업추진비 (240-01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일본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10,000
			기타지역 희생자 유해봉환	5,000
			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해 유전자검사	2,000
	일반연구비 (260-01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발굴조사	200,000
	기타보전금 (310-04)	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	유족 조의금(기타지역)	6,000
			유족 조의금(일본지역)	6,000
	민간경상보조 (320-01)	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과	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운영 지원	4,210,000
	민간위탁사업비 (320-02)	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과	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	3,525,000
	합계			8,619,000

자료: 행정안전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